

■ 화제의 뉴스 ■

민자법인 계열사 편입 '30%룰'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7일 민간투자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정거래법상 '30%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위 특수목적법인이 계열사로 편입되면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등 부담도 적지 않아 민간투자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30%룰'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특수목적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 우려 없이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 [건설경제신문 - 민자법인 계열사 편입 '30%룰' 완화\(2015. 6. 17.\)](#)